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05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박수영 · 서천호 · 윤영석
서일준 · 김재섭 · 최은석
곽규택 · 김상훈 · 강승규
권영세 · 조은희 · 이종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를 거친 경우의 책임면책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